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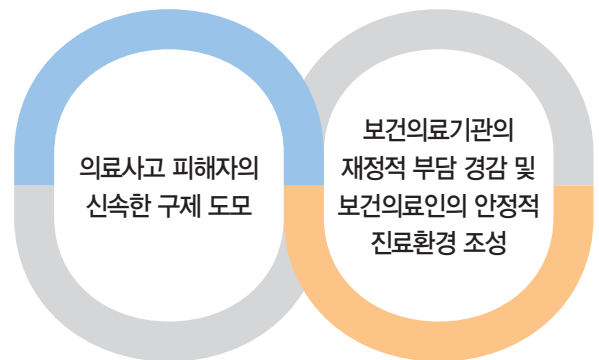


함께 풀어요, 의료사고
함께 웃어요, 분쟁해결

2021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납부 안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개요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성립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제3항

0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및 조정,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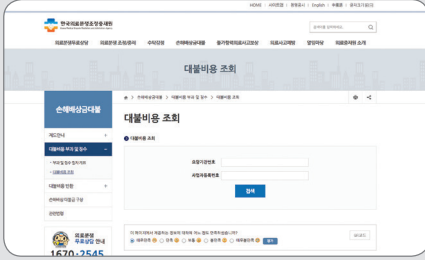
※ 설치근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02 2021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 및 납부 대상자

- 적립 목표액 : 153,202,740원
- 납부 대상자 : '20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4,363명
- ※ 2020년도 중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대상 (단, '21. 6. 30. 이전 폐업한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03 2021년도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및 산정기준

대불비용 부담액 확인 방법



- ① 한국의료보험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www.k-medi.or.kr) 접속
- ② 「손해배상금 대불」 선택 ③ 「대불비용 조회」 선택
- ④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번호 입력 후 조회

부과 방법

■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공고(2021. 11. 1.)

– '21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 대불비용 부담액 개별 안내 및 고지

–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및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사전 안내 드립니다.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은 '2021년도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 보건의료기관 종별 평균 부담액이 부과됩니다.

※ 개별 부담액은 의료중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상시 확인 가능

2021년도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 보건의료기관 종별 대불비용 부담액

- 상급종합 : 6,336,700원
- 종합병원 : 1,069,260원
- 병 원 : 111,030원
- 의 원 : 39,650원
- 치 과 병 원 : 111,030원
- 치과의원 : 39,650원
- 한방병원 : 74,020원
- 한의원 : 26,430원
- 요양병원 : 72,170원
- 보건의료원 : 111,030원

■ 최저 부담액(1만원) : 약국,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개별 의료기관의 종별 기준금액을 정액으로 부담

04 2021년도 대불비용 부담액 납부방법 및 시기

■ 보건의료기관명 :

■ 대표자명(요양기호) :

■ 대불비용 부담액 :

■ 요양급여비용 공제 : '21.12.1. ~ '21.12.31.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법 제47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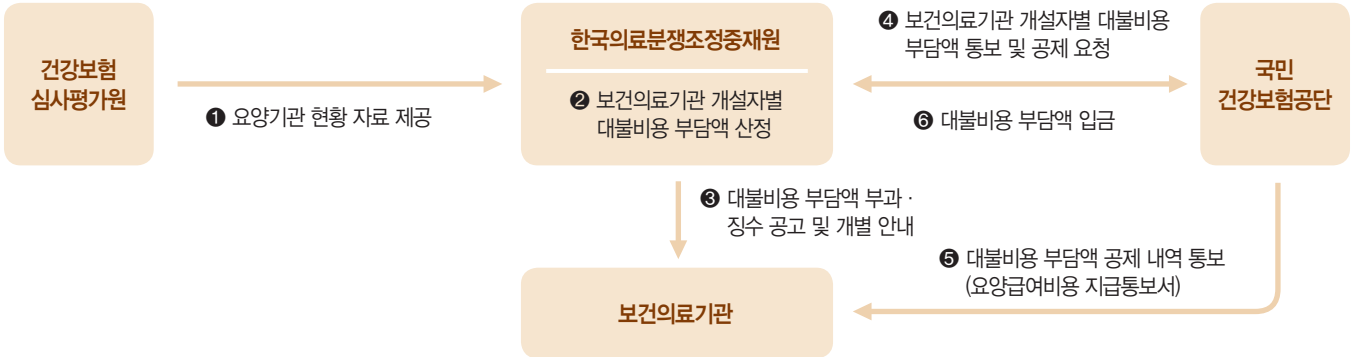
※ 공제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에서 부담액 1회 자동공제 예정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선별하여 가상 계좌 납부 안내 예정

■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 대불비용 부담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05 대불비용 부담액 징수 절차 및 체계



06 관련법령 및 재원의 관리·운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제4항
 - 제2항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
 - 제4항 : 대불비용의 납부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

- 제1항 : 대불비용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 승인(보건복지부 장관)
- 제2항 :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징수액 결정
- 제3항 :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시기 공고

※ 단, 보건의료기관 종별 운영재원이 1/10 이하로 소진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불비용 반환신청을 통해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음.

■ 의료중재원 예산과 별도 관리·운영(법 제47조제3항)

-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영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분들이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전국 보건의료기관개설자분들이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일시적 경영 악화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유용한 제도입니다.